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가합5050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하동규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울
담당변호사 조대제
4.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김일진
변 론 종 결 2020. 11. 6.
판 결 선 고 2021. 1. 27.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예비적 청구의 소 중 2019. 1. 15.자 근저당권부채권의 유용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959,582원과 그 중 247,728,180원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2020. 2. 5.까지, 피고 B은 2020. 2. 20.까지 각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취지1)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2018. 9.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를 각 취소한다.

3.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D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등기소 2018. 9. 28. 접수 제658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2019. 1. 15. 체결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채권의 유용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D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등기소 2018. 9. 28. 접수 제658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신용보증 및 보증채무이행

1) 원고는 2016. 2. 2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과 사이에, 위 피고의 주식회사 E(이하 ‘E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신용보증원금: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6. 2. 23.부터 2021. 2. 22.까지,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는 2016. 2. 25. E은행에게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3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9. 1. 25.부터 대출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9. 2. 26.자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2019. 3. 18. 부실처리되었다.

3) 이에 E은행은 2019. 6. 7.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9. 6. 25. E은행에게 대출원리금 247,728,180원(= 원금 243,000,000원 + 이자 4,728,18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미수보증료²⁾는 319,560원, 연체보증료³⁾는 2,100원, 위약금⁴⁾은 1,370,120원, 대지급금잔액⁵⁾은 1,539,622원이고, 보증채무이행금에 대하여 19. 4. 1. 이후 적용되는 손해금률은 연 8%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및 이전

1) 피고 A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2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와 2018. 9. 28. 접수 제65828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9. 1. 15.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같은 법원 등기와 2019. 1. 15. 접수 제2781호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피고 A, B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D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959,582원(= 보증채무이행금 247,728,180원 + 미수보증료 319,560원 + 연체보증료 2,100원 + 위약금 1,370,120원 + 대지급금잔액 1,539,622원)과 그중 보증채무이행금 247,728,180원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이행일인 2019.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로서 피고 A는 2020. 2. 5.까지, 피고 B은 2020. 2. 20.까지 약정이율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가 2018. 9. 27. 피고 C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일반재산의 감소를 초래하게 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다224947 판결 참조).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후인 2019. 6. 2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2016. 2. 23. 체결되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된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A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곳으로, 2018. 7. 24., 2018. 9. 3. 및 2018. 11. 23. 이에 관한 가압류 등기가 마쳐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장래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 A는 2019. 1. 25.부터 대출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9. 2. 26.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2019. 6. 25.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는바, 이로써 위 개연성이 현실화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

1)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2001. 5. 8. 선고 2000다66089 판결,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 A는 2018. 9. 27. 피고 C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을다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A는 그 주된 목적 사업인 축산물 유통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고기 구매 자금을 조달하고자 2018. 9. 27. 피고 C로부터 1억 원을 대출 받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② 피고 C는 피고 A에게 위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피고 A의 재무제표, 납세증명,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제출 받아 검토하는 등 사전에 엄격한 대출심사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A와 피고 C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등기부 상에는 주식회사 F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외에는 다른 담보물권이나 압류, 가압류 등의 어떠한 권리제한등기도 마쳐져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23억 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당시로서는 담보여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 C의 피고 A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은 정상적인 대출거래에 해당하여 수익자인 피고 C의 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A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해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 C를 약의의 수익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2018. 12. 27. 피고 A의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인데, 피고 D는 2019. 1. 15. 피고 C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A 대하여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 피고 A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9. 6. 2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피고 A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는바, 이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 피고 A의 무자력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 A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은 약 23억 원 정도인 점, ② 피고 A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채무액은 약 18억 원, 원고에 대한 사전구상채무액 약 2억 5,000만 원, 주식회사 G에 대한 채무액은 약 4억 원, H단체에 대한 채무액은 약 4억 원으로 위 부동산 가액을 훨씬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된다.

4) 피담보채권의 존재

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그 말소등기가 경로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로한 자라 할지라도, 그 가압류 이전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이상, 그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910 판결 참조).

위에서 인용된 증거들 및 을다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가 2018. 9. 27. 피고 C로부터 피고 C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I를 통해 1억 원(약정이율 연 14%)을 대출받으면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 A는 2018. 12. 27.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A로부터 피고 D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 D 앞으로 이전되기 전 변제로 그 피담보채무가 소멸됨에 따라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A는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 D는, 피고 A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되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부동산의 소유자 겸 채무자가 채권자인 저당권자에게 당해 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그 저당권설정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새로운 제3의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제3자와 사이에 새로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잔존하는 종전 채권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이용하여 이에 터잡아 새로운 제3의 채권자에게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등기 유용의 합의를 하고 실제로 그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새로운 제3의 채권자로서는 언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위 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위 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위 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624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0, 12, 13호증,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 D는 2018. 12. 27. 피고 A에게 6차례에 걸쳐 100,32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A, B으로부터 250,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채무상환계획서를 교부 받아 피고 A에 대하여 100,32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게 된 사실, ② 피고 A는 같은 날 피고 D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으로 피고 C에 대한 채권을 모두 변제한 사실, ③ 이어서 피고 C는 2019. 1. 5. 피고 D에게, 피고 C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작성하였고, 이를 피고 A에게 통지하였으며, 같은 날 위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D 앞으로 이전하는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A, C, D는 피고 D의 피고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용하여 이에 터잡아 피고 D에게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등기 유용의 합의를 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6) 그렇다면, 피고 D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고, 피고 D로서는 위 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피고 A의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 D의 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 A가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A와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2019. 1. 15.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유용계약(이하 '이 사건 등기유용계약'이라 한다)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기유용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D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등기유용계약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전득자 사이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 받았는바,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전득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인 피고 A와 수익자인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되어야 한다. 이 사건 등기유용계약은 피고 A, C, D 사이에 피고 D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의 원인이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등기유용계약 취소 청구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14108 판결 참조), 원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의 취소가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이 없이 원상회복만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사해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도 피고 D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전제가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는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계약의 취소를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고,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등기유용계약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의 소 중 이 사건 등기유용계약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A, B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문중흠, 판사 백현민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J
대 157㎡
2.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K
대 973㎡
3.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K, J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L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596.2㎡
2층 72㎡, 끝.

1) 원고는 2020. 7. 16.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 주식회사 C는 이에 대하여 부동의하였다.

2) 보증료납입일 다음 날인 2019. 2. 23.부터 부실처리일인 2019. 3. 18.까지 발생한 금액

3) 위 미수보증료에 대한 연체보증료

4) 위 보증잔액금에 대하여 부실처리일 다음 날인 2019. 3. 19.부터 대위변제일 전일인 2019. 6. 24.까지 발생한 금액

5) 원고가 채권보전조치 비용 등으로 지출한 1,620,222원에서 송달료환급금 70,600원을 제외한 금액

6) 위 당사자들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툼이 없다.